

심판위원회 규정

제정 2021.03.26.

개정 2023.04.09.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부산광역시 유도회(이하 “본 회” 라 한다) 정관

제37조 제1항, 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 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대한유도회 심판위원회, 산하단체/연맹심판위원회 및 그 단체에서 자격 취득 후 본 회에 등록을 한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본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심판 위원회의 규정을 정한다.

③ 이 규정과 당해 단체 규정이 상이할 경우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교육(심판강습회)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상임심판, 외부심판 요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2인
3. 위원 7명 이상 15인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4.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둘 수 있다.

(간사는 위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규정 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 제2항,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직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3. 여성이 재직위원수의 2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경기인 출신자가 재직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임기)

1)위원(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포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직무수행이 곤란하여 해촉되지 않는 한 임기는 자동 연장되며 4년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2)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이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1.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 2.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실정법 위반 등 본회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은 경우

제9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결정속수)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 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인이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심판 등록 및 관리

제13조(심판등록) ① 심판 자격 소지자 중, 본 회에서 작성한 심판활동 서약서<별표1>와 심판 활동 신고서<별표2>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심판등록을 갈음한다.

② 심판 등록은 본 회의 매 심판강습회 때 실시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로 한다.

제14조(심판등록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당해 단체 법제·상벌 규정 등에 의하여 제명된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4. 기타 본 회의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단체에 가입 또는 동조한 자

제15조(심판활동) ① 본 회의 심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된 자 중, 1년 이내 본회에서 주최한 심판강습회 또는 전국 심판강습회를 수료한 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② 단, 상임심판은 제14조의 등록을 예외로 한다. 제16조(기타 심판등록에 관한 사항) ① 대한체육회와 부산시체육회, 대한유도회 및 본회는 등록심판의 기본 정보, 선수·지도자 경력, 심판경력, 교육 이수 경력, 상벌 사항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또는 자료 요청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심판 활동 실적발급은 당사자의 요청 시 별도 양식<별표3>에 따라 회장 명의로 발급한다. 제4장 상임심판 요청 및 운영 제17조 본회는 소년체전대표선발전, 전국체전대표선발전과 같은 주요 대회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 명의 상임심판 및 외부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본회는 상임심판 및 외부심판의 중립적,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본회의 요청으로 활동한 상임심판과 외부심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심판 양성 교육(심판강습회) 제20조(심판강습회 운영) ① 심판의 공정성 제고와 자질향양, 인성 교육을 통해 심판 부정, 비리를 일소하여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심판강습회 운영은 본회 주관으로 시행한다. ③ 심판자격 소지자와 심판자격 시험 응시에정자 및 공인 3단 이상의 승단심사 응시 예정자를 교육대상으로 한다. ④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은 위원장이 편성한다. 2. 강사 구성은 영역별 전문가, 체육행정가, 체육학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사회 저명 인사, 체육계 인사, 심판 등을 초빙할 수 있다. ⑤ 교육에 참가한 교육 대상자는 본회의 운영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⑥ 본회는 교육이수자에 대해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21조(심판자격시험) ① 본회는 별도 규정을 정하여 2급 심판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제6장 심판평가제 제22조(심판평가) ① 본회는 1급 심판 시험 대상자 추천을 위해 매 대회 평가를 한다. ② 평가 방법은 별도 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제7장 심판배정 제23조(심판기피 및 제척) ① 본회는 대회전에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고 선수, 지도자 등이 심판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당해 단체 심판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기에 관한 심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의 친인척, 재학생의 경우 동일 소속의 현재 지도자, 사설 도장의 경우 동일 소속의 현재 지도자는 그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심판배정) ① 본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위원회 소속 심판을 우선 배정한다. ③ 본회에서 심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한 날로부터 3회이상 심판 활동 또는 심판 보조 활동 후 부산시 유도회 심판으로 등록되며 수당이 지급된다. ④ 타 지역에서 심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부산시유도회에서 주최하는 심판 강습회와 심판 활동 각 각 1회 이상 수료와 활동을 해야 수당이 지급된다.(2023.04.09.)신설 제25조(심판의 품위) ① 심판은 대한유도회 또는 본회에서 발급한 신분 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본회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심판은 본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심판은 오심 및 편파 판정에 대하여 본회의 법적 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문책) 받을 수 있다. ⑥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장 상벌 제26조(심판의 상벌)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연행을 할 경우 본회 법제·스포츠공정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오심 누적 시, 오심 횟수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으로 심판활동을 일정 기간 제한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심판의 포상) ①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 심판에 대해서는 정기이사회 또는 주요 행사 개최식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고단자 승단 심사 및 1급 심판시험 대상자 추천 시 유인책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장 심판 매뉴얼 제28조(심판 매뉴얼) 본회는 대한유도회에서 매년 발행하는 전국심판 강습회 교재를 매뉴얼로 준용하여 운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위 규정은 부산유도회 이사회 제 규정에 관한 승인을 받은 날(2019.02.09.)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본 위원회 규정 제정 전 선임된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포함)도 본 위원회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1조(시행일)위 규정은 부산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사전심의 (2019.12.05.), 이사회 제 규정에 관한 승인을 받은 날(2019.12.14.) 이후부터 시행한다. ■ 2급 심판자격시험은 8시간의 이론교육 및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자격을 판단한다.(2023.04.09.)신설 ■ 1급 심판 상정을 위한 본회 추천 기준안 ■ ○ 목적: 본 회 2급 심판의 자질을 향상하고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 ○ 개요: 본 회 심판활동 및 각종 행사 운영에 협조 및 참가하는 사람에 한하여, 매 대회마다 채점을 하여 누적된 점수를 근거로 추천 한다. 단, 심판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명을 추천 할 수 있다. 1) 심판지도자 강습회(전국 강습회, 부산 강습회) 참가하여야 한다. 2) 각종행사 에 대한 참가 및 협조를 한 자 인센티브 부여. 3) 심판으로 모범이 되는 ○명 에게 추가점수 부여. (위원장 평가) 4) 2급 심판자격 소지자(타 시도 지부)는 본회에 신고 가능하며 본회의 심판보수교육 및 강습회를 이수하여야 한다. 5) 점수는 매년 누적되며, 1급 심판 시험 응시 후 불합격 하여도 기존 누적 점수는 소멸되지 않는다. 6) 동점자의 경우는 2급 심판자격 취득일이 빠른 사람을 우선으로 하며, 취득일도 동일한 경우는 연장자를 우선한다. 7) 심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누적 점수와 관계없이 심판위원회 의결로서 추천에서 제외한다. 8) 2급 심판 자격 소지자 중, 본회의 경기의 운영 및 총무 관련 업무로 부득이하게 심판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도 상기 조항을 준용 후 점수를 부가하여 추천 대상에서 소외됨이 없게 한다. 9) 기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심판위원회 의결 후 공개,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위 규정은 이사회 제 규정에 관한 승인을 받은 날(2023. 4. 9.)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산시유도회 심판활동 신고서			
이름		소속	
생년월일		자격취득일	
연락처			
본인은 부산광역시 유도회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이와 같이 심판 활동을 신청합니다. 20 . . . 성 명 (인,서명) 부산광역시유도회 심판위원장 귀하			